무죄 선고 요청 시민 탄원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귀중

사건번호: 2026고합578 | 제1심

피고인: 손동신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관저 이전 감사단장)

관련 혐의: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께.

저는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사건을 지켜보는 시민으로서 손동신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단을 정중히 탄원합니다. 국가의 감사 업무는 사실과 기록에 대한 신뢰 위에 서 있으며, 감사정보의 부적절한 유출이나 기록의 의도적인 왜곡이 증명된다면 엄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각 범죄의 요건과 개인별 책임의 증명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공소장 최신본과 공판조서, 자료 원본을 모두 확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전한 혐의를 확정된 사실로 적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이미 증명된 듯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두 차례의 정보 전달, 2024년의 문답서·확인서 작성 및 감사위원회 심의 관련 행위는 시기와 상대방, 문서의 성질이 서로 다른 만큼 각각의 법률적 의미를 가려 달라는 뜻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1. 2023년 4월 서면질의: 질문에 필요한 사실과 보호할 비밀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2023년 4월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감사단이 확보한 증거와 내부 판단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감사대상자가 조사 범위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증거의 내용을 지나치게 알게 되면 진술과 증거 확보가 방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수신자는 외부 업체 측이어서 직무상 관련 공무원에게 정보를 전달한 사안과 같은 방식으로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묻는 서면질의에는 상대방이 어떤 질문에 답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문장이나 첨부자료의 구체적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인지, 질문에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정보를 제공했는지, 피고인이 비밀의 성격을 인식하고 전달했는지를 원문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감사자료에서 유래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전달이 곧 누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조사 계획이나 증거 확보 내용을 노출했다면 반대의 판단이 가능함도 인정합니다.

2. 2023년 11월 자료 전달: 수신자의 신분보다 실제 직무와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같은 해 11월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에게 실지감사종료보고서 일부를 발췌해 전달했다는 별도 혐의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은 직무상 비밀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원칙적으로 누설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법원 내부 보고체계와 이 사건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사이의 자료 전달은 직무 관계가 다를 수 있어 사실관계의 대조가 우선입니다.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전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직원의 실제 업무, 보고서를 요청한 경위, 전달된 발췌 부분의 내용과 비밀성, 외부 사용 가능성까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8067 판결처럼 수사기관의 실질적으로 보호할 정보는 일부만 누설되어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정보가 일부라는 이유

로 무조건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 판례의 수사지휘정보와 본 사건의 감사보고서 발췌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도 따져야 합니다.

결국 4월의 외부 업체 대상 질의와 11월의 관계 공무원 대상 자료 전달을 하나의 습관적 누설 행위처럼 묶기보다, 두 전달 행위 각각의 목적·수신 범위·정보의 성격과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구별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24년 7월 문답서·확인서: 객관적 허위와 문서의 법적 성격은 별개의 요건입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21그램 대표와 공사 현장 관계자의 실제 진술과 다른 내용을 문답서·확인서에 기록하고 전자감사시스템에 올렸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진술을 알면서 다른 내용으로 바꾸었다면 감사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만 우선 최초 답변·녹취·메모와 완성 문서의 어느 부분이 다르고, 그 차이가 단순 요약이나 표현 정리인지 사실의 의도적인 변경인지부터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27조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에 따르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문서인지, 작성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며 작성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판결은 공무원 명의의 확인서가 직무상 작성된 경우 공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므로, 확인서라는 이름이나 내부 문서라는 이유로 공문서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2026년 10월 20일 공판준비기일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건의 현장소장 명의 확인서에 공무원 서명·날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인이 자기 이름으로 쓴 확인서를 공문서로 볼 법적 근거를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이 질문은 문서의 작성 명의·공무원의 작성권한·실제 작성 경위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를 보여줍니다. 재판부의 질문 자체가 이미 문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결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답서와 개인 명의 확인서는 각각 원본 형식 및 작성·서명·등록 과정을 근거로 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4. 허위작성공문서의 행사: 작성과 전자시스템 등록은 행위별로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229조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관련되지만 별도로 행사의 대상과 방법이 문제 됩니다. 단순히 전자감사시스템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문서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떤 용도로 제시되거나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등록·조회·전송·제출의 단계가 각각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원본 시스템 기록과 공판 증거에 따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공적 시스템에 허위 문서를 등록하여 실제 업무에 이용하도록 한 경우 행사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형식적인 시스템 구분만으로 행사가 없었다고 단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실제 문서 성격과 사용 경위를 먼저 확정한 다음, 작성과 행사 각각의 고의와 행위에 관하여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직무유기: 구체적인 의무와 의식적인 포기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는 단순히 감사가 미흡했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68 판결 등은 구체적 작위의무를 알고도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경우와 업무상 태만·착각·불충분한 수행을 구별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어느 규정과 업무분장에 따라 언제까지 어떤 추가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를 인식했음에도 이행을 포기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0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공판준비기일에서 직무유기에 관한 내용이 공소사실에는 있지만 죄명과 적용 법조에서는 누락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어 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누락만으로 혐의가 무효가 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실제로 공소장과 적용 법조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본 탄원인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최종

적으로 특정된 직무유기 행위와 피고인이 방어해야 할 범위에 기초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위문서 작성과 조사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행위는 사실관계가 맞닿을 수 있어도 각 범죄의 요건과 고의가 별개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6. 2024년 8월 심의 관련 위계와 손동신 개인의 관여 범위

특검은 변경된 진술자료와 다른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를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형법 제137조 및 대법원 2017도2583 판결의 일반 법리에 비추면, 문제 된 자료가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는 사실과 이를 피고인이 알고 이용했다는 사실, 감사위원이 그로 인해 어떤 오인에 빠졌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해졌는지를 서로 이어 검토해야 합니다.

손동신 피고인이 감사단장이었다는 지위만으로 자료의 모든 변경과 타인의 의도를 공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초 진술과 변경본의 차이, 각 문서의 작성자·승인자, 전자시스템의 접근 이력, 심의 때 실제 제시된 자료와 위원의 질문·판단 근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문서의 허위성을 알고 위원회를 오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7. 불리한 정황도 공정하게 살펴 한 사람의 책임을 밝혀 주십시오

대면조사 이전의 보고서 초안 작성, 관련자 진술의 변화, 전자감사시스템 등재 및 결재 순서 조정에 관한 의혹은 엄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는지와 그 사실을 피고인이 직접 실행하거나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원본 문답서와 수정본, 증인의 직접 경험, 결재·접근기록을 비교하면 단순한 기록상 오류와 의도적인 자료 왜곡이 구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조직에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상급자의 판단이나 다른 실무자의 고의가 피고인에게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8. 결어 – 피고인 개인에게 증명된 사실만으로 판단하여 주십시오

재판장님. 불완전한 감사가 사회에 남길 수 있는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분노나 막연한 신뢰가 아니라 법률과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기초한 정확한 판단이라고 믿습니다. 손동신 피고인에게 제기된 정보 전달, 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감사위원회 심의 방해 혐의는 각기 다른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부디 피고인이 실제로 한 행위와 그 당시의 인식, 문서의 법적 성격, 직무상 의무 및 구체적 결과를 개별적으로 살펴 주십시오. 범죄사실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탄원합니다. 한 사람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단이기에 더욱 세심하고 공정한 심리를 부탁드립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귀중